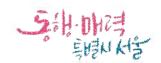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



2024년도 4분기 정원도시국 소관

예비비사용보고

2024. 12.

정원도시국

2024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림

□ 예비비 사용근거

- ㅇ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o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예비비의 사용)
- □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총 4건 509,650천원
 - [1]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(①24.10.25. / ②12.16. 자연생태과)
 - ㅇ 예비비 사용 사유 :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
 - 무단으로 인공조림 실시 및 등산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주(원고)가 서울시 및 서대문구(피고)를 상대로 **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제기 (2건)**

| 사건토지 | 사건명(번호) | 원고 | 소 제기 | 판결일 | 지급일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홍제동 산37-45 외1필지 | ① 부당이득금반환 2023나2058108 | 이○○외 1 | ′22. 9. 30. | ′24. 9. 26. | ′24. 10. 25. | 2심 종결 |
| | ② 부당이득금반환 2024가단210885 | 왕○○외 1 | ′24. 2. 8. | ′24. 11. 22. | ′24. 12. 16. | 1심 종결 |

- ① 부당이득금 소송 2023나2058108 관련하여, 1심('23.11.) 및 2심('24.9.)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가 법원에 우리 시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, 서울시 시금고 지출 업무 등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배정받아 원고에게 판결금(52,595천원) 지급('24,10,25.)
- ② 부당이득금 소송 2024가단210885 관련하여, 원고 승소 판결하였고 사건토지 내 동일한 내용의 선행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(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)됨에 따라 1심 판결금 지급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배정받아 원고에게 판결금(195,726천원) 지급('24.12.16.)

- '24년 예산편성 당시 항소심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,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함

ㅇ 지급내역: 2건, 248,321천원

| 사업명 | 지급일 | 지급액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근교산 등산로 정비 (배상금) | '24.10.25. | 52,595천원 | 1·2심 판결금 352,595천원 중 기 담보공탁('24.1.16.)한 3억원 제외한 금액 |
| | '24.12.16. | 195,726천원 | 1심 판결금 |

② **손해배상 민사소송 종결**(조정결정)에 따른 판결금 지급 ('24.11.15. 북부공원여가센터)

- ㅇ 예비비 사용 사유 : 손해배상 민사소송 종결(조정결정)에 따른 판결금 지급
- '19.10.21.(월) 15:30경 북서울꿈의숲 임야에서 목재 제거 작업 중 원고 옆에서 일하던 피고(서울시) 소속 작업반장이 사용하던 기계톱에 왼팔 부상을 입은 사고 발생에 대해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('22.9.8.)
-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'24.10.22)에 대해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결과, 다른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, **강제조정으로 확정판결**('24.11.5.)
- 이에 따라 원고에게 '24. 11. 15.까지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배정받아 판결금 지급('24.11.15.)
- '24년 예산편성 당시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, 판결금 지급 지체 시 연 12%의 지연손해금이 지속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함

ㅇ 지급내역: 18,600천원

| 사업명 | 지급일 | 지급액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북서울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 (배상금) | '24.11.15. | 18,600천원 |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(강제조정 확정) 판결금액 |

③ 민사소송 종결(패소)에 따른 판결금 지급 ('24.12.13. 산지방재과)

- ㅇ 예비비 사용 사유 :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종결(패소)에 따른 판결금 지급
- 토지 소유주(원고)가 서울시 및 서초구(피고)에 사방시설 등 공작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,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('19.11.14.)
- 항소심('24.7.) 원고 일부승소 판결 및 상고심('24.11.) 기각에 따라 긴급하게 예비비를 배정받아 원고에게 판결금 지급('24.12.13.)
- '24년 예산편성 당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,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함

ㅇ 지급내역: 242,729천원

| 사업명 | 지급일 | 지급액 | 산출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사방시설 보수정비 (배상금) | '24.12.13. | 242,729천원 | 항소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액 |